## 2025 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

<'25. 3. 10.(월), 창업투자팀>

## □ 모집 개요

- (모집 방식) 온라인 접수\*를 통한 수시 모집(3월~11월\*\*)
  - \*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www.kimst.re.kr/startup)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  - \*\* 목표가 조기에 달성된 경우, 전담기관에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음
- (모집 대상) 해양수산 분야 창업, 중소·벤처기업

## □ 모집 프로그램

구분	프로그램 명	지원 규모	비고
투자유치 역량강화	•투자유치 컨설팅	7개 사 내외	50%이상 우선선정
자금확보 지원	•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(정기IR) • 팸투어 *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, 팸투어 선정기업은 IR컨설팅 패키지 지원	28개 사 내외	(이외 공모선정) * 우선선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경우 공모선정 미진행
	총계	35개 사 내외	

- \* 정기IR은 4월, 5월, 6월, 9월, 10월 예정이며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\*\* 프로그램 별 지원 기업 수는 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□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- (신청자격)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·중소·벤처기업
- (제외대상)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
- 신청기업,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- 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
### □ 신청방법

○ **(신청방법)**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/ko/index.do) 공고·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
#### <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>

①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접속  $\to$  ② 로그인(필요시 일반회원가압)  $\to$  ③ **'2025 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'** 클릭, 신청  $\to$  ④ 기본정보 입력  $\to$  ⑤ **제출서류 업로드**(첨부파일 당 10MB 용량제한)  $\to$  ⑥ 제출  $\to$  ⑦ 정보입력메뉴에서 신청조회

## ○ (신청서류) 별첨3 참고

연번	신청 서류	비고	
1	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		
2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필수 제출	
3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		
4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	
(5)	사업계획서 또는 제품·서비스 소개서(자유양식)		
6	사업자등록증		
7	법인등기부등본, 중소기업확인서, 벤처기업확인서		
8	팸투어 계획서	해당 시 제출	
9	투자실적 및 증빙자료(계약서 등)		

- ※ 제출자료는 신청기업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- 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- ※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,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필요 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## 1 해양수산 투자유치 컨설팅

### □ 프로그램 목적

하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교육, 맞춤형 컨설팅 등 투자 유치 역량강화로 기업 자생력 제고 유도

### □ 프로그램 내용

- **(지원 규모)** 총 7개 기업
- (지원 내용) 기업진단, 투자유치 기본교육 실시, 자금조달 설계, 재무 분석, IR자료 작성 컨설팅, 투자사 매칭 및 IR 실시 지원 등

#### < 지원 항목 >

#### ㅇ 투자유치 컨설팅

- (기본교육) 투자의 이해, 투자 실무,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등
- (기업진단) 기업현황, 사업계획, 성장로드맵, 투자 가능성 등 종합 진단
- (**맞춤형 IR전략**) 투자 컨설팅 모듈에 따라 진행(사업화전략, 재무분석 및 전략, 자금조달설계, 재무추정 및 기업가치평가, 사업계획서 및 IR자료 작성 등)
- (투자자 발굴·매칭 및 IR) 벤처투자자 대상 IR 및 피드백, 국내외 잠재 투자 기관 개별 접촉 및 투자 상담 매칭
- (사후관리) 투자자 상담결과 안내, 투자계약 지원
- IR 컨설팅
  - IR자료 작성 및 피드백, IR피칭 등 지원
- ※ 컨설팅 지원항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, 진단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## □ 지원대상 선정절차

- (지원기관 선정) 사전검토, 현장진단, 선정평가(서류)로 선정
  - \* 내외부 전문가를 2인 내외로 구성하여 온/오프라인 현장진단 실시(제출서류 및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평가 진행)
  - (가점사항) 가점항목에 따라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

가점 규모	가점 항목
5점	• 예비오션스타 지정 기업('21~'24)
3점	•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('22~'24) *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(선발 시 가점 적용)
1점	• '24년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발굴 우수기업 • '24년 블루 스타트업 우수 기업

- '23년 사업화 R&D 지원사업 우수 기업
  \* 최종평가 평균점수 80점 이상, 주관기관
 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
   해양수산 R&D 기술이전 우수기업
- □ 추진절차

구 분	세 부 내 용
사업 공고 및 접수 (3월~)	• 수혜기업 공모 선정 - 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수시 모집(온라인 접수)을 통한 선정
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(4월)	<ul> <li>선정평가(4월)</li> <li>사전검토, 현장진단, 선정(서류)평가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</li> <li>협약체결</li> </ul>
<b>—</b>	
수행계획 수립 (4~5월)	• 기업별 종합진단을 통한 KPI 설정 및 맞춤형 컨설팅 계획 수립
<b>+</b>	
컨설팅 등 실시 (5~11월)	• 기업별 맞춤 컨설팅 실시
<b>—</b>	
투자설명회(IR) 실시 (10월)	• 투자기관 발굴 및 기업별 투자자 매칭
<u> </u>	
성과보고 (12월)	• 컨설팅 수행성과 보고 - 수혜기업별 컨설팅 결과 보고 및 성과 취합
	- 구에기집글 신글당 걸피 모고 곳 정피 귀엽

- ※ 지원기간 동안 IR컨설팅 수시 지원
- 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사업 신청, 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
- 수행기관 및 보육기업은 협약 종료 후, 2년 간 매출액, 고용창출, 투자 실적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

## 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	김예나 연구원	02 2460 0272	1: 24261: 1 1
창업투자팀	김에나 연구원 	02-3460-0373	ynkim212@kimst.re.kr

## 2 해양수산 투자 활성화

### □ 프로그램 목적

○ 해양수산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고,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투자 성과 창출

### □ 프로그램 내용

- (정기 IR) 해양·수산펀드 운용사 등 해양수산 분야 투자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 IR 기회 제공
- (기업 팸투어) 투자기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기술·제품시연, 사업 아이템 검증 및 사업장 규모·제조설비 파악 등 투자 상담 ※ 현장 방문 시, 기업별 1시간 내외로 기업 IR, 질의응답, 현장투어 운영 예정

### □ 지워대상 선정절차

○ (지원기관 선정) KIMST, 수행기관,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월 1회 내외 서류평가 및 선정

#### < 평가기준 >

#### o 투자기관 협의회

평가항목	점수
■ 경영진 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	20점
■ 기술성(기술(제품)의 독창성, 개발단계 및 사업화정도 등)	30점
■ 시장성 및 사업성(시장규모, 성장성, 사업전략 타당성)	25점
■ 투자가능성 및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등	25점

### ㅇ 기업 팸투어

평가항목	점수
■ 경영진 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	15점
■ 기술성(기술(제품)의 독창성, 개발단계 및 사업화정도 등)	25점
■ 시장성 및 사업성(시장규모, 성장성, 사업전략 타당성)	20점
■ 투자가능성 및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등	20점
■ 현장방문평가(제품시연 가능성, 제조설비 확인 필요성 등)	20점

#### o 기타사항

- 신청 기업이 없거나 월간 2개 사 이하일 경우, 평가를 이월하여 진행할 수 있음

## □ 추진절차

구 분	시행주체	세 부 내 용
수시 모집 및 평가 (3월~12월)	수행기관	<ul> <li>온라인 접수를 통한 상시 모집(3~11월)</li> <li>월별 평가 실시</li> <li>신청 기업이 없거나 월간 2개 사 이하일 경우, 평가를 이월하여 진행할 수 있음</li> </ul>
<b>+</b>		
투자기관 협의회/팸투어 (3~11월)	수행기관	• 투자기관협의회 <sup>*</sup> 및 팸투어 실시 * 투자기관협의회(정기IR)은 4월, 5월, 6월, 9월, 10월 예정이며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※ 지원기간 동안 IR컨설팅 수시 지원
- 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□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사업 신청, 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투자자 대상 기업IR, 현장준비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, 일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는 등 선정의 의무를 다해야 함
  - ※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(팸투어 참여 포기, IR·현장준비/안내가 현저히 불량) 향후 3년간 해양수산 투자유치 컨설팅, 해양수산 투자유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수행기관 및 보육기업은 협약 종료 후, 2년 간 매출액, 고용창출, 투자 실적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

## 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	김예나 연구원	02-3460-0373	ynkim212@kimst.re.kr

## 붙임

# 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

	프로그램	신청서
--	------	-----

신청분야 (복수선택 가능)	□ 투자유치	컨설팅 □ 해양수산 투자기괸	: 협의회(정기IR) [	□ 기업현장방문(팸투어)
<b>신청 소재지</b> (팸투어 신청 시)	□ 수도권 □	] 강원권 □ 충청권 □ 호[	남권 □ 경상권	□ 제주권
	회사명		기업유형 연구소보유	□ 법인 □ 개인 □ 보유 □ 미보유
	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	- YYYY.MM.DD	사업자등록번호 제품·기술·서비스	-
신청기관	(사업자등록증 기준)주소홈페이지	팸투어의 경우 현장	<i>방문지 기준으로</i>	<i>작성 *삭제 후 제출</i>
현황	<b>투자실적</b> (해당 시)	'22~'24년 투자 내역	*삭제 후 제출	투자연월/투자금액)
		<b>종업원 수</b> 보험 가입자 기준)* <b>*대표자포함</b>	, , , , , , _	
	성 명 대표자 전 화		생년월일/성별 휴대전화	/
	E-mail 성 명		FAX 부서/직위	
수행책임자	휴대전화		E-mail	
제품기술서비스 주요특징 (요약)				
상기와 길		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		
· ·	청자격 적정성	성 확인서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		
· ·		꽃 이용에 진한 등의지 나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	보 활용을 위한	동의서
		- 제품·서비스 소개서(자·		1계회 도시 교회되 150
,	나업계획서 등	등 및 시장현황, 영업현황) 자료	:, 성성노느법, 새구	-세획 등이 포함된 IK용
·	·업자등록증 이드기브드보	중소기업확인서, 벤처기업혹	한이서/웨다 시/	
7. 팸	투어 계획서(		; └^((ⅥO ^I)	
			20	25년 월 일
	(기업명)		대표이사	(인)
	해양=	수산과학기술진흥	등원장 귀	하

## 1. 기업현황

## 가. 기업 연혁

◎ 연혁:설립이후 주요 변경 연혁 (설립, 상호변경, 대표변경, 합병·분할·상장내용, 주요납품실적, 수상경험, 언론보도 등)
□ (yy.mm.dd) 주요 내용 □

## 나. 재무현황

항목	최근년도(2024년)		전년도(2023년)		전전년도(2022년)	
		백만원		백만원		백만원
매출액(전체)	매출액 증가율	%	매출액 증가율	%	매출액 증가율	%
자산총계		백만원		백만원		백만원
부채총계		백만원		백만원	백만원	
자본총계		백만원		백만원	백만원	
자 본 금		백만원		백만원		백만원
영업이익	백만원		백만원		백만원	
이자비용		백만원		백만원		백만원

## 다. 조직현황

◎ 조직: 조직도 및 인력 구성	현황

## 라. 대표자 인적 사항

	기 부터	간 까지	학교명	전 공	수학 상태	학 위
학력	'00.03	'04.02			졸업, 수료	학사·석사·박사
					졸업, 수료	
					졸업, 수료	
	기 부터	간 까지	업체명	주요업무		직위
경력	′00.03			필요시 줄/칸 추가 가능		
07						

## 마.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

권리구분/등록여부 (국내외특허,실용신안)	등록(출원)명칭	등록(출원)번호	등록(출원)인
<i>국내특허/출원중</i>		필요시 줄/칸 추가 가능	
국내특허/등록완료			

## 2. 주요 기술(제품) 현황

기술(제품) 명칭	*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주요 기술(제품)명 기입
기술(제품) 정보	* 보유기술/제품 특장점 및 경쟁력 등 기업이 가진 기술/제품의 기술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(사진 포함)
국내외 시장 및 사업화 추진현황	*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사업 추진 현황, 향후 사업화 계획 등에 대해 작성

## 3. 신청목적 및 기대효과 ※ 참여기업 선정의 중요한 지표로 상세히 기술 요망

신청목적	□ * 귀사가 본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주요목적 및 의지를 기술
기대효과	□ * 본 사업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

## 4. 자금조달 내역 및 계획

(단위: 천원)

과거	유치일자	투자기관	유치금액
투자유치 내역			
(해당 시)			
	+	용도	금액
향후	(예) R&D 자금/생	산시설 및 장비구축 등	
투자유치 희망금액 및			
사용용도			
	-	합계	
희망 컨설팅 내용 및			
요청사항			

### 【유의사항】

신청인이 제출하신 자료는 동 사업 신청기업 선발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허위 작성이 발각될 시 사업 신청, 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제출하신 자료는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.

#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

검토내용	해당	비해당
□ 신청자격 해당 여부		
▶ 해양수산 분야 창업·중소·벤처기업(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)		
□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		
▶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		
<ul> <li>▶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</li> <li>▶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</li> <li>▶ 파산.회생절차.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</li> <li>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(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)</li> <li>□ 참여제한 여부</li> </ul>		
▶ 신청기업,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		
"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" 수행을 위해 신청자격 적 하며, 자료가 만약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취소 등 진흥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		
ー ー	/ <b>X</b> 1 (	01)
기업(기관)명 :	(직역	
대표이사(기관장)명 :	(인)	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	•	

### [첨부2]

##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
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수혜기업 선정, 선정기업 관리 등을 위해 "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사업"에 지원한 기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규정등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신청기업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경우에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1. 개인정보 수집,이용 목적

- 해양수산부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사업 수혜기업 선정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- 2.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: 해양수산부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컨설팅기관

#### 3. 개인정보 이용 목적

- 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사업 수혜기업 선정 및 선정된 기업 관리, 지원

#### 4. 이용 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

- 성명, 주소, 연락처, 생년월일, 이메일 주소, 소속, 기타 실적 기록 등 개인 또는 기업 식별정보

#### 5.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거부의 권리

-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음. 다만,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6. 수집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- 수집된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수립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.

2025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): (인)

### [첨부3]

##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#### 1. 정보활용 목적

-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"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"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-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·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·활용

#### 2.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- (지원이력정보)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,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
-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·휴·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
- (인증정보) 기업의 인증·확인정보로서 신청일, 획득일, 유효기간 등

#### 3.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

- 해양수산부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#### 4. 동의 효력기간

-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
- \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- 기업정보 수집 시점: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
- \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- ※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(해양수산부) 및 수행기관(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)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5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): (인)

## [첨부4] ※ 팸투어 신청기업만 작성

# 현장방문행사(팸투어) 계획서

1. 투자자의 현장방문을 희망하는 이유(신청 목적 기재)
2. 현장준비 사항 * 제품시연, 생산공정 시스템 등 투자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현장준비 사항 기재
MENE, 8288 N=1 8   MANIE 212   XC 282-1 N8 MM
3. 회의실 수용인원 (명)
4. 현장방문행사 세부일정 (기업IR-질의응답-현장투어 순으로 진행, 일정 및 시간은 선정 후, 안내)
* <u>IR(15분), 질의응답(15분), 현장투어(장소, 현장내용 구체적으로 기재)</u> 포함하여, <u>총 60분 이내(</u> IR, 질의응답 시간은 각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)로 세부일정 수립
5. 방문 시, 볼 수 있는 현장사진 첨부